

임 대 계 약 서

CB092A



CN08E3Q1PF



임대인 “씨-넷 조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_____”을(를)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구 분	갑	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21-02-50630	221-83-01195
주 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046-5	죽전 논자동 192-1
상 호	씨-넷	강원대방주
전화번호	033-264-3200	033-240-0340
대 표 자	조 규 장 (인)	박종익 (인)
계약일자	2010년 9월 30일	

제 1조 임대 계약의 정의

물품임대계약이란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한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며, “을”은 이에 대해 소정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대상물품

1. HP Officejet Pro 8000 프린터

(잉크 구매조건 임대, 임대계약시 잉크 1set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제 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본 계약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할수 있다.
3. 본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장비원금액(259,000원)의 10%를 청구하는것으로 한다.

제 4조 임대료

1. 잉크 추가 구매비용은 검정 33,000원 / 컬러 22,000원으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없고 최소 3달에 잉크 1set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유지보수

1. 갑은 을에게 제품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임대기간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지원 및 근무시간 외 지원은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문제 발생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1. “을”은 물품 및 부가옵션등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등을 훼손함은 물론, 물품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와 “을” 임의의 매각,양도,대여,유용,질권의 설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압류,가압류,공조,공과금의 체납,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권리 주체에게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주장하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조처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이전에 계약해지시에는 “갑”과 “을”은 서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갑”은 본 계약조항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물품에 손해(파손 또는 분실)가 발행할 때에는 “갑”에게 제품가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조

기타

1. 본 계약에 이이가 있을때에는 “갑” “을”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사 업 자 등 록 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록번호 : 221-83-01195

법인명(단체명) : 강원대학교

대 표 자 : 권영중

개업년월일 : 1947년 06월 14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본점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사업의종류 :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교 부 사 유 : 대표자정정

2008년 08월 12일

춘천세무서장

